

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782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7.

발 의 자 : 김남희 · 박희승 · 전용기  
채현일 · 박균택 · 김정호  
주철현 · 이강일 · 김기표  
진성준 · 신정훈 · 이연희  
박해철 · 서미화 · 이원택  
안태준 · 이수진 · 임미애  
서영교 · 최혁진 · 이광희  
박상혁 · 이인영 · 김교홍  
의원(2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.

그런데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·교육, 심리치료, 교화프로그램, 직업능력개발훈련,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

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,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.

이에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고목을 노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 | 1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가. ~ 허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~ 허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. (현행 고목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~ 7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~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